

EU, SFDR을 보완하는 RTS에 관한 최종 보고서 공개

- 금융기관 투자의 지속가능성 공시 구체화 및 확대 방향 담겨 -

유럽의 3개 주요 금융 규제 기관들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 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는 2023년 12월 4일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을 보완하는 기술적 세부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ESA는 보고서를 통해 SFDR의 RTS에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투자 결정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지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1. RTS의 개정 배경

지속가능 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은 유럽연합(EU)이 수립한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발표되었고,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SFDR은 금융기관에 투자 자산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해당 투자가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SFDR 이행을 위한 세부 기술 기준서(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인 위임 규정(Delegated Regulation)은 SFDR의 시행령에 해당합니다. RTS는 금융상품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방법론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자본이 그린워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으로 흘러갈 경우 미치는 악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 항목을 포함합니다. RTS가 제정되어야 ESG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별하는 제8조(환경적 사회적 특성을 홍보하는 금융상품), 제9조(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RTS의 작성을 유럽의 3개 주요 금융 규제 기관들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 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에 위임하였으며, ESA는 2023년 12월 4일 SFDR을 보완하는 RTS에 관한 최종 보고서(JC 2023 55)를 발표했습니다. 위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투자 결정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of Investment Decisions on Sustainability Factors, PAI)의 새로운 지표 도입, 기존 지표에 대한 구체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에 대한 새로운 공시 및 공시 템플릿에 대한 수정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RTS의 주요 내용

(1)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SFDR의 제2조 제17항에 따른 "지속 가능한 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2023년 4월 EU 집행위원회의 Q&A 를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세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정의하는 자체 개념과

방법론을 개발해야 합니다: ①환경 또는 사회 목표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an environmental or social objective), ②그러한 목표를 중대하게 해치지 않는 것(do not significantly harm any such objective, DNSH), ③투자 대상 회사의 우수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of investee companies)

ESA는 RTS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공시를 제안하였습니다:

- new Articles 17a, 18 (5), 44, 54a and 61 of SFDR RTS: 지속가능한 투자 비율 계산 방식에 대한 구체화(비례적인 look-through 방식 또는 특정 임계값 초과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pass or fail 방식)
- new Articles 26 (2) lit. (a) and 39 lit. (a) of SFDR RTS: SFDR의 제10조에 따른 웹사이트 공시에서 DNSH원칙과 관련된 임계값 또는 기준에 대한 정보, 즉 투자가 환경 또는 사회 목표를 중대하게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위해 PAI 지표가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

(2) 새로운 PAI 지표 도입

PAI 지표로서 새롭게 추가된 3가지 사회적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지표에 대한 설명 및 PAI 지표에서 파생상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 등 PAI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조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노조 결성,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 소비자 고충 및 불만처리 메커니즘 등 상세 지표들에 대한 변경 사항도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 new no. 13 Table 1 Annex I of SFDR RTS: 비협력 세금 관할 지역에서의 누적된 이익 (Amount of accumulated earnings in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 new no. 15 Table 1 Annex I of SFDR RTS: 담배의 재배와 생산에 활동하는 회사에 대한 노출 (Exposure to companies active in the cultivation and production of tobacco)
- new no. 16 Table 1 Annex I of SFDR RTS: 적정 임금보다 적게 받는 직원의 비율 (Share of employees earning less than the adequate wage)

한편, 의무적 지표였던 "노동조합 설립이나 노동자 대표 선거에 대한 방해"는 선택적 PAI 지표로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적음"으로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new no. 4 Table 3 Annex I of SFDR RTS)

(3)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에 대한 새로운 공시 사항

ESA는 모든 SFDR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금융상품이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부 정보를 계약 전, 웹사이트 및 주기적 공시의 전용 섹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new Articles 14a, 18 (3), 29a, 42a, 51a and 59a and new sections in Annex II to V of SFDR RTS).

	계약 전 (pre-contractual)	웹사이트 (website)	주기적 공시 (periodic)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	O	O	O
기준 연도 대비 백분율 또는 절대 감축량으로 계산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O	X	O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 및 각 방법론에 부합 여부	O	O	O
투자 대상 회사 수준의 GHG 배출 감소 달성을 위한 참여 계획(해당되는 경우)	X	O	X
GHG 회계 및 보고 표준 방법론	X	O	X
특정 기간 동안 구매하거나 취소한 탄소 배출권	X	X	O

3. 국내기업에 대한 시사점

EU 집행위원회는 3개월 내에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서 전체를 승인할지, 수정할지 또는 제안된 수정안 중 일부를 삭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제안하는 모든 수정안은 ESA의 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SFDR RTS를 개정하는 위임 규정 초안을 채택하면 일반적으로 2~4개월 이내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전달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심사 기간이 종료되면 위임 규정은 공식적으로 공표되고 공표 후 2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효됩니다.

SFDR 및 RTS의 적용 대상은 EU 역내 금융서비스 부문(은행, 연기금, 자산운용회사 등)이며, 특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유럽에 진출하거나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국내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선임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김정남 T. (+82) 2 6003 8559
 ESG전략 그룹장 E. jnkim@yoonyang.com

유현상 T. (+82) 2 6182 8716
 변호사 E. hrsyu@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시니어매니저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T. (+82) 2 6003 7470
 시니어컨설턴트 E. khji@yoonyang.com